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4. 10. 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9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김길자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
제4차 회의(2014년 9월 2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
 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」에서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로 변경
-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명시
- 환경오염행위신고서 서식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,
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로 변경하고, 조문 중 “보상”을 “포상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규를 명시하고, 환경오염행위신고서(별표 2안)를 신설함.
-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,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 「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3-138호)을 근거로 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,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, 그 밖에 조문은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길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 15 호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9월 일

발 의 자 : 김길자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, 법제처에서 정한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」에서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로 변경

나.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명시(안 제1조)

다. 환경오염행위신고서 서식 신설(안 제3조 별표 2안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
「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환경과, 총무과, 기획예산과

라. 입법예고(2014. 9. 4 ~ 9. 11) 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대기환경보전법·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및 소음·진동규제법등”을 “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 등”으로, “관할 우리구”를 “우리 구”로, “보상”을 “포상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신고 및 보상)”을 “(신고 및 포상)”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라”로, “보상”을 “포상”으로 하며,

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
“보상대상”을 “포상대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의하여 보상금”
을 “따라 포상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상금액은 별표와”를
“포상금액은 별표 1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보상금액은 연간”을
“포상금액은 연간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”을 “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
별표 2 서식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접수 및 처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「민원사무 처리에
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의한 신고·보상업무”를 “따른 신고·포상업무”로 하고,
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보상금”을 “포상금”으로 한다.

별표(제2조제3항)는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 안]

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(제2조)

1.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

가. 지급률 :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

나. 지급액 : 최고 10만원, 최저 3만원

2. 배출부과금·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

가. 지급률 : 부과되는 배출부과금·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

나. 지급액 : 최고 50만원, 최저 3만원

3.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

구 분	포 상 금
경고·시정명령·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	5만원
조업정지·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	10만원
허가취소·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	20만원

4.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간담회,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천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,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의 포상은 한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5.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기준을 적용하며, 2명 이상이 동일사안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.

[별표 2 안]

환경오염행위신고서				
신고자	성명		연락처	
	주소			
	은행명		계좌번호	
신고내용	※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			
증빙자료				
비고				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날인)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조례</u>	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기환경보전법</u>·「<u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 및 <u>소음·진동규제법</u>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<u>관할</u> <u>우리구</u>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<u>적정한 보상</u>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<u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「<u>대기환경보전법</u>」, 「<u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</u>」, 「<u>폐기물관리법</u>」, 「<u>유해화학물질 관리법</u>」, 「<u>토양환경보전법</u>」 등 -- <u>우리 구</u>----- ----- <u>포상</u>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<u>신고 및 보상</u>)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<u>의한</u> 신고를 할 수 있다.	제2조(<u>신고 및 포상</u>) ①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.
② <u>구청장</u>은 제1항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신고를 한 자 중 <u>정당한</u> 신고인에 대하여 <u>보상</u>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	②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</u>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 이라 한다)은 제1항에 따라 ----- <u>포상</u>----- ----- . ----- <u>각 호의</u>

당하는 경우에는 <u>보상대상</u> 에서 제외한다.	<u>어느 하나</u> ----- <u>포상대상</u>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<u>의하여</u> <u>보상금</u> 이 지급된 경우	7. ----- <u>따라</u> <u>포상금</u> -----
③ 환경오염 행위신고에 대한 <u>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.</u>	③ ----- <u>포상금액은 별표 1과</u> ----.
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<u>보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u>	④ ----- <u>포상금액은 연간</u> -----.
제3조(신고방법) <u>제2조제1항의</u> <u>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·일반우편·우편엽서·전화·팩스·인터넷·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</u>	제3조(신고방법) <u>제2조제1항에</u> <u>따른 신고는 별표 2 서식에 따라</u> -----.
제4조(접수 및 처리)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	제4조(접수 및 처리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
제6조(신고인의 보호) ① (생략)	제6조(신고인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 조례에 <u>의한 신고·보상</u>	② ----- <u>따른 신고·포상</u>

<u>업무</u>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 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 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 여서는 <u>아니된다</u>.	<u>업무</u>----- ----- ----- ---- <u>아니 된다</u>.
제7조(예산의 확보) <u>보상금</u>의 지 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 부과금 ·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 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 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	제7조(예산의 확보) <u>포상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